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COVID)-19 검역대응 지침(제14-3판)

2023. 6. 1.

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

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유입에 따라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·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 목차

| Ι.    | 대응원칙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| • 1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|-----|
| П.    | 사례정의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| · 2 |
| ш.    | 공항 검역다   | l응 절차 ······ |              |   |   | · 4 |
| 1.    | 공항 검역대응  | 주요사항 안내 …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•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4 |
| 2.    | 검역대응 흐름! | Ē        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4 |
| 3.    | 입국검역     |          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. 5 |
| 4.    | 유증상자 검역  | 조사·조치 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• 6 |
| 5.    | 무증상자 조치  |          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. 8 |
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|     |
| IV.   | 항만 검역다   | 응 절자  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. 9 |
| 1.    | 항만 검역대응  | 주요 용어정의 …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. 9 |
| 2.    | 항만 검역대응  | 주요사항 안내 …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10  |
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 |     |
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|     |
| 6.    | 무증상자 조치  | ••••••       |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 |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 | 14  |
| V.    | 진단검사 및   | ! 격리조치 ··    |              |   |   | 15  |
| VI.   | 확진환자 빌   | '생 시 조치 ·    |              |   |   | 18  |
| VII.  | 접촉자 관리   |              | ••••••       | ••••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22  |
| VIII. | 기타 행정시   | 항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| 23  |

# 서식 및 부록

# ≪서식≫

|   | 1. 건강상태질문서                     | 25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| 2. 검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              | 26   |
|   | 3. <삭제>                        | 27   |
|   | 4. <삭제>                        | 28   |
|   | 4-1. <삭제>                      | 29   |
|   | 5. 기초역학조사서                     | 30   |
|   | 6. <삭제>                        | 31   |
|   | 7.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   | 32   |
|   | 8. 검사의뢰 관리대장                   | 33   |
|   | 9.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               | 34   |
|   | 10.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                | 35   |
|   | 1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확인서        | 36   |
|   | 1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접촉자 조사 양식    | 38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< | <부록≫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|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| 39   |
|   | 2.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  | 43   |
|   | 3.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        | · 52 |
|   | 4. 항만 입항 군용(軍用) 운송수단 검역절차      | · 55 |

# I. 대응원칙

# 1. 법적 근거

- 전세계적인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등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「감염병예방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'제2급감염병'으로 대응함
  - \* (근거)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」(질병관리청고시 제2023-7호) 제1호가목
- 「검역법」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·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

## 2. 대응방향

-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 하였으며,
  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에 따른 '권고' 및 '자율' 기조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 절차로 전환
- 향후 발생 상황, 변이 발생 여부,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사례 정의와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이 변경 가능하며
  - 공·항만의 코로나19 관련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,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 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

# Ⅱ. 사례정의 등

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'경계단계' 상황에 적용하며, 「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## 1. 사례정의

- ▶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
  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\*
    - \* 한시 시행 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
- ▶ 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#### ○ 확진환자

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\*
- ▶ 한시 시행 ('22. 3. 14. ~ 별도 안내시까지)
- ▶ 증상이 있고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,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
- 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 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
- ※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판단할 수 있음

#### 3. 입국검역

- ◆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,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\*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
  - \*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
- (대상) 모든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
- (**구성**) 입국자 발열 여부(발열감시카메라, 고막체온계 등),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한 건강상태 정보 확인
- 검역정보 확인
  - (Q-CODE 이용자)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고, 검역관은 Q-CODE를 통해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정보 확인
  - (Q-CODE 미이용자)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Q-CODE에 건강상태 정보 입력, 검역관은 Q-CODE를 통해 입국자 정보 확인
    - \* Q-CODE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역 실시

## 4. 유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

- (유증상자 기준)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\*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(모든 해외입국자 대상)
  - \*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라 입국일 기준 21일 이내로 설정
- (대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
- 1. **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**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 환자 등 (기내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)
- 2.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
- 3. 입국장에서의 체온 측정\*, 건강상태질문서\*\*(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)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
  - \*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,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
- \*\*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

※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「검역법」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

#### ○ 기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

- 기내 유증상자\* 발견 시 「검역법」 상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\*\*하여 신고
  - \* 기내 유증상자 및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- \*\*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 별지 명세표에 유증상자 작성
- 유증상자를 우선 하기하여 검역대에 인계, 검역소는 보건교육, 임시격리, 검체채취 등 조치 실시

#### ○ 유증상자 검역조사

- 유증상자\*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등 독립된 공간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\*\* 실시
  - \*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- \*\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-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,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국립중앙 의료원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
  - \* 검역소 소재지 119 신고 고려
- 상태가 경증인 경우,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
  - \* 이동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,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

#### [(참고) 중증도 분류기준]

| 단계 | 정의  | 현행 중증도 분류 |  |
|----|---|-----------|--|
| 1  | 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|
| 2  |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<br>(limit of activity but No O2)     | - 경증이하    |  |
| 3  | 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등중       |  |
| 4  | 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|
| 5  | 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<br>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 |           |  |
| 6  | 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중증       |  |
| 7  | 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)<br>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          |           |  |
| 8  | 사망(death)   | 사망        |  |

#### ○ 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

- (검역관)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(실)로 함께 이동
  - \*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
- 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
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) 기초역학조사[서식 5] 후 PCR검사 실시
  - \*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D) 착용
- (유증상자) 독립된 공간(점역조사실,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)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관찰시설(실) 등에서 임시 격리

-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  - (양성) ▲자택, ▲병원 또는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등에서 격리 권고
    - \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  - (음성)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
## 5. 무증상자 조치

- (내국인·외국인)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(비용 자부담)
  - ※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(A3)과 그 관련자는 미군부대에서 자체관리
  - (양성) ▲자택, ▲병원 또는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등에서 격리 권고
    - \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  - (음성) 별도 조치 불요

# Ⅳ. 항만 검역대응 절차

## 1. 항만 검역 관련 주요 용어 정의

- 하선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
- (입국자)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2조에 따라 출입국의 입국심사를 받는 내·외국인
- (재승선 내국인)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
- (상륙허가자) 하선자 중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출입국에 상륙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
- 선박 탑승 유형에 따른 항만 입항 인원 구분
- (선원)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「선원법」에 따라 공인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(전선 또는 편승 인원을 포함)
- (여객)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으면서 근로 제공 외의 목적으로 「해운법」상 해상여객운송사업 해당 선박에 탑승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원
- (기타탑승자) 선원과 여객을 제외한 인원

※ 기존 검역 대응 지침 상 '승객'으로 표현된 인원을 '기타탑승자'로 적용함

#### 2.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

#### [주요 추진경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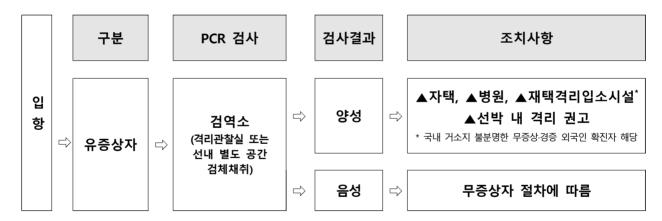
- ◆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('22.6.8.~)
- ◆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9.3.~)
- ◆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('22.10.1.~)
- ◆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중단(`23.6.1.~)

#### [지속 추진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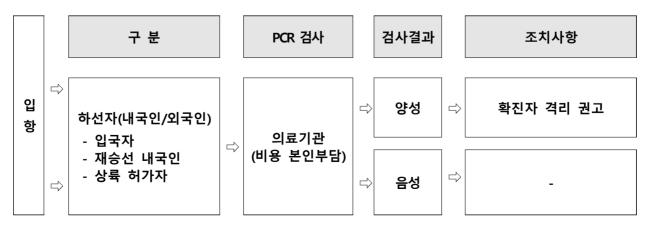
- ◆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운영
- ◆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·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

## 3.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

#### □ 유증상자



# □ 무증상자



#### 4. 검역조사

#### 가. 숭선·비숭선 검역

○ (승선검역) 승선검역 대상\* 선박은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'탑승자 전원'의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 검역조사 실시

#### ※ 승선검역 대상

- ①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건상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
  -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
  -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
  -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
- ②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선박의 경우
- ④ 「국제보건규칙」에 따라 작성된 **선박 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**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
- ⑤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
- ⑥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(비승선 검역) 서류(전자)검역 대상 선박 경우 전산을 통해 검역조사 실시
  -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전산 심사결과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파정 시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

## 나. 하선 절차

- (검역정보 확인) 검역관이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을 원칙\*으로 함
  - \* 단,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도 가능
- (중상분류)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감시 결과 증상 분류

#### 5. 유증상자 검역조사 · 조치

- (유증상자 기준) 발열(37.5° 이상) 또는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(모든 하선자 대상)
- (대상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
- 1. 선박 보건상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 등 (선내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자 포함)
- 2.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감염병환자등
- 3. **입국장**에서의 체온 측정\*, 건강상태질문서\*\*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병환자등
  - \*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하고, 해열제 복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유증상자로 분류 가능
  - \*\*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하면서 검역정보 확인 병행
- (선내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) 선내 유증상자 발견 시 「검역법」 상 선박 보건상태신고서 상에 적시\*하여 신고
  - \*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후면에 기재
  - (여객선) 유증상자를 분리조치 후 검역소에 인계, 검역소는 보건교육,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등 조치
- (유증상자 검역조사) 유증상자\* 분류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또는 선내 독립된 공간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\*\* 실시
  - \*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  - \*\*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
#### ※ 크루즈선 내 선의가 시행한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시

- ① 선내에서 5일 격리 권고(격리 중 국외 출항하는 경우 IHR 통보)
- ② 하선을 희망할 경우 검역단계에서 검역소 검체채취 실시(PCR 검사)
- ③ 확진자 발생 운송수단 감염 예방 조치 실시(이동금지, 선박소독, 비대면 하역작업 등)
- ④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및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로 크루즈선 내 전문가용 RAT 양성자 발생 메모보고 실시(종합상황실 확진자 통계 보고는 제외)

- 상태가 중증 이상인 경우,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(필요시,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병상 배정 요청)
- 상태가 경증인 경우,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함
  - \* 이동 시,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, 검사 결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인 철저

#### [(참고) 중증도 분류기준]

\*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참고

| 단계 | 정의  | 현행 중증도 분류 |  |
|----|---|-----------|--|
| 1  | 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증이하      |  |
| 2  |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<br>(limit of activity but No O2)     |           |  |
| 3  | 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|
| 4  | 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등중       |  |
| 5  | 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<br>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 |           |  |
| 6  | 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중증       |  |
| 7  | 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)<br>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          |           |  |
| 8  | 사망(death)   | 사망        |  |

# ○ (유증상자 검역조사 시 역할)

- (검역관)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(실)로 함께 이동
  - \*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(필요시 안면보호구, 가운, 레벨D 등 착용)
- 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 (확진자 다수 발생 등) 검역소의 경우,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 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

- (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) 기초역학조사[서식 5] 후 PCR검사 실시
  - \*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D) 착용
-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  - (양성) 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 권고
    - \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  - (음성)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- (하역 작업 등)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, 선원교대 등 가능

#### 6. 무증상자 조치

- (내국인·외국인)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(비용 자부담)
  - (양성) 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 권고
    - \*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VI.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
  - (음성) 별도 조치 불요

# Ⅴ.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

- ※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
-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- 단,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
  - \*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-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

## 1.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

- (검체채취 장소)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
  - \* 검역조사실, 격리시설(실), 선내 등
- (검체종류) 상기도 검체(권장),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\*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
  - \* [부록 2]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'참조
  - (상기도 검체)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 채취
    - \*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,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
  - (하기도 검체) 가래가 있는 경우 채취(가래 유도 금지)
- (개인보호구)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 보호복(레벨 D) 착용[부록 3]
- ※ 검체 채취시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알콜로 소독
- (검사의뢰)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(공문 등)
  - \* 검체 의뢰시 검사의뢰 관리대장[서식 8]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
  - \*\* 관할 질병대응센터에서 해외출입국관리팀(메모보고)으로 실적 송부

- (검사수행)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  - \*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
- (결과회신)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(공문 등)
- (양성 확인) PCR 검사결과 '양성'인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(유선보고 등)
  - \* 단, 검역소에서 수탁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, 양성 확인 시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)으로 보고
  - (양성보고) 양성인 경우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며,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)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
  - (최초 양성 판정)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 후 최초 양성 판정 시, 방대본 진단총괄팀으로 잔여검체 송부 및 재검사 후 최종결과 판정

## 2.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임시 격리

- ※ 유증상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에서 임시격리 시 적용하며, 격리시설 운영은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 지침」에 따름
- (격리 장소) 검역소 격리관찰시설(실)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
  - 임시격리 장소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및 장갑을 착용하고, 이송 대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  - 해당 검역소에서 격리관찰시설(실)이 부족할 경우 인근 검역소 시설 공동 이용(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검역소간 협력 운영)
  - 격리대상자 다수 발생으로 자체 격리시설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,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
- (검역관) 각 검역소 임시격리 장소로 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해외 출입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(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)
  - \*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(서식 10) 또는 일일 상황보고로 갈음

- (격리 관찰자)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
  - \*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(의료기관)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병상 배정 요청 후 임시 격리시설로 이송
  - \* 격리 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경증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가 또는 숙소 대기 가능

## 3.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

- (검사결과별 세부사항)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등 보건교육 실시
  - (음성)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(입국 후 및 하선 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
  - (양성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재택격리 권고\* 안내, 필요시 관할 시·도 담당자에게 병원(중증 이상) 이송\*\* 요청
    - \* 재택격리는 국내에 거주지(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)가 있는 경우에 한함
  - \*\* 세부적인 확진자 이송 및 격리 절차는 VI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따름
  - (미결정) 추가검사 실시하여 미결정 2회 시 역학조사관, 공중보건의 또는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 권고 여부 결정
    - \* 사례정의 및 판정 등은 Ⅷ. 기타 행정사항 → 재검출자 사례 참고
- (검사결과 보고)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총괄팀, 해외출입국관리팀에 인적사항(성명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출발지 등) 및 결과 보고
  - \*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
- ※ 검사확인서[서식 11]는 내국인에 한해 요청시 발급 가능, 외국인은 발급 불가

# Ⅵ.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

## 1.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

- (환자 발생 보고)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, 검역정책과,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)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
  \* 건강상태질문서, 기초역학조사서 첨부
  - (조치결과) 확진환자 이송(병상배정 포함) 및 접촉자 조사 결과 등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공유
- (환자 발생 통보) 검역소는 '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'(또는 공문)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(시·도 포함)에 환자 발생 통보
  - \* 확진자 탑승 선박이 회항 또는 자진출항하거나 확진자를 해당 선박 내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통보 불요

## ※ 국내 거소지가 없는(혹은 불분명한) 외국인의 경우,

- (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)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
- (무증상·경증 확진자)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 격리 입소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
  - \* 단, 통보 절차는 검역소 소재 보건소와 협의 가능
  - (관련 자료 공유)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는 관할 보건소(시·도 포함)로 FAX 또는 공문 전송
  - (통보방법) 프로그램 내'비고(특이사항)'란에 ①검역소명, ②입국일 ③방문국가 ④국적 ⑤체류기간 등 작성 후 통보

## 2. 격리병상 배정 요청

- (검역관) 재택치료가 불가한 확진자의 경우, 시·도 연락담당관으로 병상 배정 요청,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
  - \* 각 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
- 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임시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(의료기관)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
- (시·도 연락담당관) 지역 내 병상 배정여부 확인, 해당시설에 병상(실) 가동준비 요청 및 병상 배정 결과·담당자 번호를 검역소에 공유

#### ※ 검역단계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

- 중중 및 고위험군 확진자
- (인천공항검역소) 내 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 요청
  - \* 다만, 확진자 중 급격한 호흡곤란, 의식저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(거점)전담병원에 이송,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·도에 공유(서울, 인천, 경기 지역 환자일 경우에는 '수도권 긴급대응반'에 공유)
- \*\* 중수본-1994호(2021.1.18.) 참고
  - ※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(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)가 임시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(의료기관)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
  - ※ (인천공항 확진자 이송)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검역소 앰뷸런스로,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·도에서 담당
- (기타 검역소) 검역소 소재지 시·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·도 환자 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, 검역소 소재 시·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
- 무증상 경증 확진자
- 자가용 및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자가 또는 숙소 등에서 격리 권고
  - \* 국내 거소지가 없는(혹은 불분명한) 입국자의 경우,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 격리 권고(비용자부담)

## 3. 확진 환자 이송 및 인계

#### 가. 확진자 이송

- (재택치료 대상자 이송) 자차 및 방역택시(비용 자부담) 이용하여 귀가
- (재택치료 불가자 이송) 병원에 확진자 이송 및 도착시점 유선알림
  -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KF94 마스크 착용 유지
  -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
  -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(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) 착용
- (재택치료 불가자 인계) 이송요원은 병원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 역학조사서 사본 및 확진환자 인계(의료진에게 환자 건강상태 설명)
  - 검역소 구급차가 없을 경우, 지원 구급차(보건소 또는 119구급차) 이송요원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인계 및 환자 상태 설명

#### ※ 확진자 이송수단 및 방역수칙 안내

- (이송수단) 검역소·보건소·119·민간운영 구급차 또는 개인차량(본인·동거가족 운전) 및 방역(일반) 택시 이용 가능하며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송
  - \* 개인차량 및 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: 운전자 및 환자 외 탑승 자제
- (방역수칙) KF94 동급 이상이 마스크 및 장갑 착용, 환자 뒷좌석 대각선에 착석,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, 하차 후 차내·외 표면소독, 운전시 창문 개방,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선금지
  - \*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,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

#### 나.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(항만)

- (조치사항)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 국외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, 회항이 불가하며 재택(또는 보건소 인정 장소)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 권고
  - \* 확진자 격리 권고기간: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 자정(24시)까지
  - \*\* 선내 격리 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(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)
- (확진자 하선) 확진자는 5일 격리 이후 하선 권고
- (하역작업 등) 선박 소독 완료, 동승 선원 중 유증상자 PCR검사 결과 확인,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, 선원교대 등
- (추가검사)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 불요
- ※ 확진자 발생 선박 입항 시 조치사항(확진자가 선박 내 탑승)
- 검역소장 판단 하에 진단검사, 격리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

# Ⅶ. 접촉자 관리

#### 1. 접촉자 조사

- ◆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·진단검사 등 고강도 입국자 관리 및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역량을 고려하여 검역단계 접촉자 조사 체계 변경
  - (**공항**) 기내 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
  - (항만) 국내 접촉자(항만근로자 등)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(동승선원 조사는 지속)
- ※ 단, 신규 변이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재개 가능

## 2. 확진자 발생 선박 내 동승선원 및 운송수단 관리

- **(동승선원 관리)** 확진자 발생 선박에 손소독제·마스크·장갑 등을 배포, 동승 선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PCR검사\* 실시
  - \* 단, 작업 및 선원 교대없이 국외출항을 선사 등에서 원하는 경우 PCR검사 생략 가능
- (운송수단 관리)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

#### ※ 선박 이동금지 해제 기준(모두 부합 시 해제 가능)

- ① 확진자 조치(격리 권고 등) 후 선박 소독 완료가 확인된 경우
  - \*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소독 완료한 경우 재차 소독명령을 하지 않아도 됨
- ② 동승 선원(또는 승객) 접촉자 중 유증상자의 PCR 검사 결과가 확인된 경우
  - \* 단, 코로나19 검사 외에 타 감염병 진단검사를 함께 수행 중인 경우, 해당 감염병에 대한 검사 결과까지 확인한 이후 이동금지 해제
- (**하역작업 등**) 선박 소독, 확진자 이송 후 선원과 항만근로자 간 접촉을 삼가고, 작업 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등 방역수칙 준수
- (국외출항) 확진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거나 미결정자 탑승 선박에 대해 선사 등에서 국외출항(회항 등)을 희망할 경우 출항 시 IHR 통보\*
  - \* 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메모보고로 해당 선원 성명(영문명), 국적, 여권번호, 확진자 발생일, 차항지 도착예정일 등 관련 정보 공유

# Ⅷ. 기타 행정사항

- (행정조치)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, 이동금지 등 조치, 소독이행여부 확인
- (관계기관 협조요청) 항공사\*, 출입국관리사무소, 세관, 공·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\*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요청 등의 업무는 항공사와 협의
- (검사결과 확인)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
- (이송수단 등 소독) 공·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 구역 및 격리시설(실),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
  - 코로나19 관련 「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」 및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지침」, 「입국자 임시격리시설(실) 소독 안내」에 따라 소독 실시
- (폐기물 처리)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, 격리시설(실)의 경우 「국립검역소 격리시설(실) 관리 지침」, 「입국자 임시격리시설(실) 소독 안내」에 따라 폐기물 처리
- (검역관·지원인력 감염관리) 현장검역, 검체채취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 수행
  - (검역인력)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, 결과 확인 전까지 격리 권고
  - (검역지원인력\*)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, 유증상자· 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
    - \* 검역 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,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 해제 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 가능
  - (공·항만 상주기관 직원)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 시,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

○ (재검출자 사례) 국내·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입국 또는 상륙 후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

#### ※ 사례정의

- (재검출)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검사 또는 RAT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
- (**단순 재검출**)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,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,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
- (**재감염 추정**)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
  - 최초 확진일 이후 45-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(또는 해외여행력)이 있는 경우
- (사례판정)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,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

#### ※ 사례 판정 주체 :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

-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국내·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(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)를 통해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,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
- 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
- ② 성명, 생년월일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
- 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  - ※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확진으로 간주
- (환자관리) 단순 재검출의 경우에는 '음성'과 동일한 조치, 재감염 추정사례의 경우에는 '양성'과 동일하게 조치함
  - \* 미결정자가 단순재검출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
- (보고·통보) 확진자 통보 시 사례판정 결과 포함
- (건강상태질문서) 보관기간 1개월